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685

발의연월일: 2021. 4. 23.

발 의 자:김민철・김철민・김홍걸

민형배 · 민홍철 · 서영교

양향자 • 어기구 • 오영환

이용호 · 임오경 · 장철민

한병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정분권은 중앙-지방간, 지방-지방간 재정 및 기능 불균형을 조정하고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중앙기능의 지방이양시 재원도 함께 이양하고 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맞게 배분하여야 함.

그러나 제1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균특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재원은 3년간만 한시 보전하도록 규정하였음. 이로 인하여 균특사업의 수요가 많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균특예산 보전이 종료되는 202 3년부터는 농산어촌개발, 지방하천정비 등 균특사업을 대폭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균특 지방이양사업 3년 한시 보전 규정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해 그 사업비 비용을 보전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6855호 부칙 제2조).

법률 제 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68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6855호 지방세법	법률 제168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제2조(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유효기간) 제71조 제3항 제3호	유효기간)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u>2022년 12월 31</u>	<u>2027년 12월 31</u>
<u>일까지</u> 효력을 가진다.	<u>일까지</u>